재로운 도약,
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

2026. 9. 22.

심 사 결 과 보 고

의안 번호	의 안 명	심사결과	비고
4620	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	원안가결	

대전광역시 서구의회
경제복지위원회

의안 번호	4620

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경 제 복 지 위 원 회

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22.

경제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년 8월 27일, 최병순·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
나. 회 부 일 자: 2026년 8월 27일, 의장으로부터 회부
다. 상정 및 심사 일자: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
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.의결 (2026.9.9.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생활 안심 보험의 가입 및 지원의 입법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주체와 대상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보험의 보장내용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신청자를 규정함(안 제6조)
- 보험금 지원 제외 사유를 규정함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: 류옥화)

○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 책무를 구체화한 적법한 자치법규 입법으로 판단함.

○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중 하나인 우발적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지자체가 보험을 통해 분담함으로써, 당사자의 외출 및 사회활동 제약을 줄이고 실질적인 복지 체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함.

○ 다만, 사업 추진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·시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매칭 사업으로 구비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,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기에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: 생 략

5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6. 소 수 의 견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 음

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최병순 의원)

의 안 번 호	4620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7.
발 의 자 : 최병순·정인화 의원
찬 성 자 : 강정수, 설재영, 김동성, 김태민, 정홍근, 이원배, 송용석, 박용준, 박순호, 최미자, 신진미, 오세길, 김명현, 함미정, 정능호, 양유환, 최혜연, 김세원(18인)

1. 제안이유

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생활 안심 보험의 가입 및 지원의 입법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주체와 대상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보험의 보장내용을 규정함 (안 제5조)

라.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신청자를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보험금 지원 제외 사유를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관련부서 협의 필요

다. 소관부서 :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8. 28. ~ 9. 3. / 7일 간

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발달장애인”이란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보호자”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보험”이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
제3조(보험 가입 등)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, 보험료,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(보험회사 선정)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5조(보험의 보장내용)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한다.

제6조(보험금 청구)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제7조(보험금 지원 제외)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
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
3.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관련법령

○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발달장애인"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.
   가. 지적장애인: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
   나. 자폐성장애인: 소아기 자폐증,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
   다.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2. "보호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3호의 보호자(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)
   나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
   다.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
   라.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(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)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, **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**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